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 
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오중균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오중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25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9월 25일

발의자 : 강수진, 고영옥, 권영애, 김경이,  
김육영, 소형준, 양순임, 오중균,  
이관우, 이용진, 이호건, 임태근,  
임현주, 정기혁, 정병기, 정윤주

### 1. 제안이유

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의회 보고  
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  
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의회 보고  
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채무과

라. 입법예고 : 2025. 9. 30. ~ 2025. 10. 4.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)”를 “(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취득 또는 처분하는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·처분한 경우
2.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<u>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 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</u>) ① · ②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2조(<u>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 지 않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</u>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 하고 취득 또는 처분하는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 · 처분한 경우</p> <p>2.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의회 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 우</p>